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1
----------	-------

제출년월일 : 2010.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사전 정비
- 나. 부패 연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명문화
-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 순화 반영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해촉)에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위원의 결격(해촉)사유 명시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용어 변경에 따른 “가정”을 “가족”으로 변경
- 다.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 변경

3. 개정근거

-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30조
-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계획【부구청장방침(감사담당관-1015,2010.2.9)】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0. 8. 26. ~ 2010. 9. 14.(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0.9.30.)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라.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이하 “동”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이하 “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중 “설치등”을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구역내에”를 “구역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000동 자치회관(이하 “자치회관”이라 한다)로”를 “000동 자치회관(이하 “자치회관”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하“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를 “(이하“자치회관 운영”이라 한다)”로 하고, 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는제2항에”를 “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로,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0조제6항에 의한”으로 하고,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치회관의 운영”을 “자치회관 운영”으로 하며, 제5항 및 제6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제7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제8항 중 “자치회관와”를 “자치회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회관의 운영”을 “자치회관 운영”으로 하고, 제3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 제목 중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고, 제3항 중 “기준과 범위 안에서”를 “기준과 범위에서”로 하며, 제6항 중 “수강료 에”를 “수강료에”로 하고, “자치회관의 운영”을 “자치회관 운영”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중 “이용등”을 “이용 등”으로 하고 제3항 중 “제10조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자치회관의 운영”을 “자치회관 운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2항(본문 및 제1호) 및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제7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10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직무등”을 “직무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통합”을 “총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제4호부터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제2호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같은 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제21조제3항 중 “개의”를 “회의를 개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을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생략)</p>	<p>제2조(정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이하 “동”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p>
<p>제4조(설치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등)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000동 자치회관(이하 “자치회관”이라 한다)로 한다.</p>	<p>제4조(설치 등) ① 해당 구역 내에 ② 000동 자치회관(이하 “자치회관”이라 한다)으로</p>
<p>제5조(기능) ① (생략) 1. ~ 6. (생략)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p>	<p>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해당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② (생략)</p> <p>③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해당</p> <p>④ <u>그 밖의</u></p>
<p>제7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p> <p>② (생략)</p> <p>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 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및 시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⑥ 구청장은 자치회관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평가시상할 수 있으며,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지역문화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운영) ① (이하 "자치회관 운영"이라 한다)은</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u>..... <u>제10조제6항에 의한</u></p> <p>④ <u>해당</u></p> <p>..... <u>자치회관 운영</u>.....</p> <p>⑤ <u>예산의 범위에서</u>.....</p> <p>⑥ <u>예산의 범위에서</u></p>

현행	개정안
<p>⑦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u>10인</u>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⑧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u>자치회관</u>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p>	<p>⑦ <u>10명</u></p> <p>⑧ <u>자치회관</u>과</p>
<p>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u>자치회관</u>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p> <p>② 자원봉사자는 <u>자치회관의 운영</u>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자원봉사자) ① <u>자치회관 운영</u>.....</p> <p>② <u>자치회관 운영</u></p> <p>③ <u>예산의 범위에서</u></p>
<p>제10조(사용료등) ① ~ ② (생략)</p> <p>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로 정하는 <u>기준과 범위 안에서</u>,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다.</p> <p>④ ~ ⑤ (생략)</p> <p>⑥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u>수강료</u>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u>자치회관의 운영</u>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⑦ (생략)</p>	<p>제10조(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기준과 범위에서</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수강료</u>에 <u>자치회관 운영</u>.....</p> <p>⑦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1조(이용등) ① ~ ② (생략)</p> <p>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④ ~ ⑤ (생략)</p>	<p>제11조(이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0조에 따른</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u>자치회관의 운영</u>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u>자치회관의 운영</u>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u>자치회관의 운영</u>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2조(주민참여) ① <u>자치회관 운영</u>.....</p> <p>② <u>자치회관 운영</u>.....</p> <p>③ <u>자치회관 운영</u>.....</p>
<p>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자원봉사자가 아니 강사에게는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수당) ①<u>예산의 범위 안에서</u></p> <p>② <u>예산의 범위 안에서</u></p>
<p>제15조(설치) 동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동에 <u>서울특별시마포구 000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제15조(설치) <u>서울특별시 마포구 000동 주민자치위원회</u></p>
<p>제17조(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과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에 한하여 고문이 된다.</p>	<p>제17조(구성등) ① 1명..... 25명..... 3명 해당</p>

현행	개정안
<p>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당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p> <p>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② (생략)</p>	<p>제20조(해촉) ① <u>각 호의 어느 하나</u>..... 제4호부터 제6호 1. <u>해당</u> 2. 6개월 3. ~ 4. (현행과 같음) 5. <u>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u> 6. <u>그 밖에</u> 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회의) 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21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회의를 개최</u>..... 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23조(실비보상 등) 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3조(실비보상 등) ① <u>예산의 범위에서</u>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2>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2>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전액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전액면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전액면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전액면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전액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전액면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	전액면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족	전액면제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2010. 10. 25)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0월 7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10월 8일

4. 근거법령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2010. 7. 26 법률 제9968호) 및 영 제30조(2009. 5. 28

대통령령 제21513호)

나. 한부모가족지원법(2010. 8. 18 법률 제10302호) 제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동 일부개정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 2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계획에 의거 부패에 연루된 위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여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정비함으로서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

[주요내용]

- (1) 안 제20조(해촉)에서 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문화하여 해촉하도록 규정
- (2) 안 제10조제5항과 관련하여 <별표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에서 2008. 1. 18일 법률 제8655로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관련 근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을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족”으로 함으로써 “가정”을 “가족”으로 명칭 변경
- (3) 국어기본법 과 한글맞춤법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하고 적절한 용어로 정리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 2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계획」에 의거 주민자치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부패요인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